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정훈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br>번호 | 18246 |
|----------|-------|

발의연월일 : 2026. 4. 10.

발 의 자 : 박정훈 · 박충권 · 조지연  
진종오 · 고동진 · 박정하  
박덕흠 · 김성원 · 이종욱  
서범수 · 최수진 · 우재준  
김장겸 의원(13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부가통신사업자 등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 · 합성물 · 가공물 또는 복제물,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 · 청소년성착취물(이하 “불법촬영물등”이라 한다)이 유통되는 사정을 인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 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그런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아동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 목적의 대화 및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 ·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이와 관련된 정보는 불법촬영물등에서 제외되어 있음. 또한,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법에 명시하여 그 조치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국내대리인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조치 의무사업자의 의무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부가통신사업자의 유통방지 조치 의무 대상이 되는 정보에 「아동·청소년의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정보를 추가하고,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명확히 규정하며, 국내대리인에게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5 및 제22조의8).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5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정보

제22조의5제2항 중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불법촬영물등으로 의심되는 정보를 상시적으로 신고·삭제요청할 수 있는 기능을 마련하는 조치
2. 제1항에 따라 신고·삭제요청을 받은 불법촬영물등이 이용자의 검색결과에 송출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용자에게 추천되지 아니하도록 제한하는 조치
3. 이용자가 게재하려는 정보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불법촬영물등으로 심의·의결한 정보에 해당하는지를 비교·식별 후 그 정보의 게재를 제한하는 조치
4. 불법촬영물등을 유통할 경우 제1항에 따른 삭제·접속차단 등 유

통방지에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이용자에게 미리 알리는 조치

5. 그 밖에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제22조의8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2조의5제5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조치 등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치의무사업자가 불법촬영물등이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 삭제요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의 요청 등을 통하여 인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② 전기통신역무의 종류, 사업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의무사업자는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른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정보

② -----  
-----  
-----  
-----위하여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

1. 불법촬영물등으로 의심되는 정보를 상시적으로 신고·삭제요청을 할 수 있는 기능을 마련하는 조치

2. 제1항에 따라 신고·삭제요청을 받은 불법촬영물등이 이용자의 검색결과에 송출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용자에게 추천되지 아니하도록 제한하는 조치

3. 이용자가 게재하려는 정보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불법촬영물등으로 심의·의결한 정보에 해당하는지를 비교·식별 후 그 정보의 게재를 제

## <신 설>

제22조의8(국내대리인의 지정)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  
는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제22조  
의7제1항에서 정한 기준에 해  
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  
대리인”이라 한다)를 서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 4. (생략)

② ~ ④ (생략)

4. 불법촬영물등을 유통할 경우  
제1항에 따른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  
을 이용자에게 미리 알리는  
조치

5. 그 밖에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제22조의8(국내대리인의 지정) ①

-----  
-----  
-----  
-----  
-----  
-----  
-----  
-----.

1. 제22조의5제5항에 따른 자료  
의 제출

2. ~ 5. (현행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